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6. 20.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52호로 2023년 5월 4일 차인영 의원 외 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장례비지원 등 수혜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신규 수당을 신설하여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공로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적용대상(안 제3조)
- 나. 책무 및 예우(안 제4조 ~ 제5조)
- 다.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안 제6조)
- 라. 복지지원 등(안 제9조)
- 마. 보훈예우수당 지급(안 제10조)
- 바.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11조)
- 사. 예산지원(안 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3. 5. 4. ~ 2023. 5. 8.):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장례비지원 등 수혜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신규 수당을 신설하여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공로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3조에서는 조례 적용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추가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공훈선양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적용 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추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하였고,
-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유공자 본인”에서 조례안 “제3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까지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공훈선양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 ③ 생략

제10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부양가족수당
4.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제11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해부상군경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② ~ ⑤ 생략